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유권해석 변경 알림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」 관련)

1.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인정규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은 사업주체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택의 공유지분 단독 상속 시 공급규칙 제53조제1호 적용 여부

○ (기존)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미적용

○ (변경)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

* (예) 주택의 공유지분 50%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, 자녀가 공유지분 50%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인정(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)

나.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 소유 시 공급규칙 제53조제5호·제9호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전용면적·공시가격 산정 기준

○ (기존)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 소유 시 전체 면적·가격을 기준으로 산정

○ (변경)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로 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·가격으로 산정

* 소형·저가주택 가격산정 : (다가구주택 소유면적 / 전체면적) * 공시가격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, 경기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대전광역시장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광주광역시장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부산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강원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, 한국감정원장,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(사)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

주무관 **이전욱** 행정사무관 **김진호** 주택기금과장 **한성수** 전결 2020. 11. 19.

협조자

시행 주택기금과-9877 (2020. 11. 19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343 팩스번호 044-201-5530 / bejw@molit.go.kr 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